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1. 축산업 허가제 도입

- ◇ 축산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대해 확대 적용하고, 그중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 ◇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규모에 따라 2012~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
- ◇ 위치·시설·사육두수·교육 기준을 정하여 기준 충족시 허가

#### 가. 허가제 도입 시기

- 1)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1년 유예기간 설정)
  - 이미 규모에 관계없이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도 대부분 양호한 상태이므로 즉시 허가제로 전환
- 2)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2012~2015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
  -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 2013년(전업농) → 2014년(준전업농) → 2015년(소규모 농가) 순으로 확대

◇ 가축사육업은 통상 전업농, 준전업농, 소규모 농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당초 전업농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 전업농 : 농업소득 6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축종별 사육두수

\* 준전업농 : 농업소득 3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한 축종별 사육두수

• 지역별 토론회 및 워크숍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결정

• (당초) 2012년 : 전업규모, 유예기간 2년

→(개선) 2012년 : 전업규모 × 2, 유예기간 1년

2013년 : 전업규모, 유예기간 1년

3) 2012년 허가제 대상농가(기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시설개보수 유도, 2013년에 점검

•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

나. 허가 기준 :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 기준 설정

1) 위치기준 :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한 축사설치 제한 규정 적용
- 지방도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관련시설(500m)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설치 제한

\* 전체 가이드라인은 법률로 설정, 그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함

2) 시설기준

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 가축사육업 시설기준 + 추가기준

구분	세부항목
종축업	• 집란실·종란보관실, 발육실, 발생실, 병아리보관실 등 별도 설치
부화업	• 종란보관실, 종란 훈증소독시설, 발육실, 발생실 및 병아리보관실
정액등처리업	• 축사와 별도의 제조실 및 판매사무실, 정액채취실 설치

② 가축사육업 :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완화된 기준 적용

※ 축사시설 개보수 예산은 한·EU FTA대책으로 2011~2020년간 1.6조원 기 반영

3)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 종축업·가축사육업별로 기준 적용

구분	비육 한우	착유 젖소	돼지		산란계	오리
형태	방사식	갈집	모돈	비육돈	평사	평사
면적/두	7.0㎡	16.5㎡	1.4㎡	0.8㎡	0.11㎡	0.246㎡

- 4) 교육기준 : 업종·축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종사기간별로 차등 적용
- 연간 교육시간(안) : 신규 진입농가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40시간(5일), 5년 이상 24시간(3일) 의무교육
    -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는 16시간(2일) 의무교육
  - 교육내용 : 소독 및 예방접종 등 실습 위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벌칙

1)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

현행	개선(안)
등록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허가 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및 정책자금 지원 중단
-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

에게 허가증 대여, 폐사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 3회 적발

- 살처분 명령·외국인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 발생·전파,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라. 향후 추진 계획

- 축산업 허가제 세부도입방안 확정 및 축산법 개정 추진(5~10월)
  - 축산법 하위법령 정비 추진 및 허가제 시행(2012년)
-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6월)

〈참고 1〉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와 대상(가금)

연도	축종	대상규모	호수(%)	수수(%)
2012년 (기업규모: 전업×2)	산란계 육계	3만수	596호 (38.8)	48,566천수 (78.7)
		5만수	601호 (34.1)	44,014천수 (56.5)
2013년 (전업규모)	산란계 육계	3만수	596호 (38.8)	48,566천수 (78.7)
		3만수	1,248호 (70.8)	68,606천수 (88.1)
2014년 (준전업 규모)	산란계 육계	2만수	841호 (54.8)	54,356천수 (88.1)
		2만수	1,521호 (86.3)	75,242천수 (96.6)
2015년 (소규모: 사육면적 50㎡이상)	산란계 육계	1천수	1,535호 (100)	61,691천수 (100)
		1천수	1,763호 (100)	77,871천수 (100)

〈참고 2〉 사육규모별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 기업규모, 전업규모 및 중규모

구분	세부항목
차단방역 및 소독	소독시설 : 차량·출입자소독 장비, 발판소독기 방역시설 : 울타리, 차량차단바, 물품반입창고, 사료보관창고, 관리, 탈의(샤워)실, 출하대 소독 장비 설치, 매몰지 확보 * 관리수의사 : 소 1백두, 돼지 2천두, 닭 5만 수 이상 계약관리수의사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돼지, 닭),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시설(음용수기준)
분뇨처리 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및 위탁처리
폐사축 처리	소각, 랜더링, 산분해처리, 매몰 및 위탁 등
시군허가 기준	주거밀집지역 및 도로·하천 인근 사육제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인근 신규 제한, 적정사육두수 관리 등

■ 소규모

구분	세부항목
차단방역 및 소독	소독시설 : 발판소독조, 휴대용 소독기 방역시설 :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 공동방제단 개편으로 소규모 취약농가 정기적 방역관리
축사시설	격리시설, 환기시설(돼지, 닭), 전기시설, 소화시설, 급수조 청결상태
분뇨처리 시설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톱밥축사 및 위탁처리
폐사축 처리	소각, 랜더링, 매몰 및 퇴비화 등(돼지, 닭)
시군허가 기준	주거밀집지역 및 도로·하천 인근 사육제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종축장) 인근 신규 제한, 적정사육두수 관리 등

〈참고 3〉 현행 종축업, 부화업 허가기준

구분	허가기준
종축업 (종돈, 종계, 종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는 건축법상 허가된 건축물(신규)</li> <li>- 사료·종축이동로와 분뇨·폐사축이동로 분리 운영</li> <li>- 폐사축 위탁처리시 별도 분리보관 시설·장소 확보</li> <li>- 분만·포유 및 육성시설 분리 설치, 종돈·번식용씨배지 사육시설과 양돈업 시설 등은 별도 건물에 설치(종돈)</li> <li>- 무창식계사시설, 계사내 안개분무소독시설 설치, 집란실·종란보관실 별도 설치(종계)</li> </ul> </li> <li>• 축산관련 학위취득 후 양돈업체 3년 이상 근무자 배치</li> </ul>
부화업 (종계·종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는 건축법상 허가된 건축물(신규)</li> <li>- 종란보관실, 소독실, 발육실, 발생실 및 병아리보관실 설치</li> <li>- 부화장은 계사와 격리된 건물에 설치</li> <li>- 폐사축·계란껍질 위탁처리시 별도 분리보관 시설·장소 확보</li> <li>- 종란 훈증소독시설 설치</li> </ul> </li> </ul>

\* 이외의 사항은 기업규모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적용

〈참고 4〉 축종별 두당 적정사육면적 기준(육계)

구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고
육계	무창계사	39kg/m <sup>2</sup>	
	개방계사	강제한기	36kg/m <sup>2</sup>
		자연환기	33kg/m <sup>2</sup>

2.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 확립

가.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농가에 백신 비용 분담

- 부과대상 :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

- \* 전업규모 농가수 : 한우(전체의 7.4%), 육우(13), 젖소(67), 돼지(44)
- \* 전업농 사육두수 : 한우(전체의 47%), 육우(68), 젖소(83), 돼지(88)
- 분담비율 : 국비 50%, 자담 50%

나. 2012년부터 지자체에 매몰보상금 분담

- 분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도 10%, 군 10%)
  -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대규모 매몰 가능성이 적고, AI는 과거최고지급액 시군(2008년, 250억원)에 적용시 약 25억원 분담 예상
- \* 발생상황 및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몰보상금이 일정규모(예 10억원) 이상 초과시 지원 방안 강구

다.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 기준 마련

- 보상원칙 : 시가 100% → 양성농가 80%, 음성농가 100%
- 감액기준
  - 해외여행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 미이행 : 80% 감액
  - 방역의무 미이행 : 위반 항목 수에 따라 20~60% 감액
- \*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중 가축출하, 이동제한 기간중 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은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 감액

3. 방역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가. (중앙 방역기관) 농림수산물부 방역관리과 신설

- 농·축·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 설립
  - (기구) 방역기능 강화를 위해 구제역 진단과 신설, 위기관리센터 대체신설, 축산밀집지역에 가축질병 방역센터(5개소) 신설
  - (인력) 국경검역,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백신 수급관리, 예방접종축 관리 등 신규업무 추진을 위해 증원
- \* 조직 통합으로 발생하는 공통부서 인력 56명도 방역현장에 배치

나. (지방 방역기관)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인력 확충

- 시·도 가축방역기관 :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예찰, 질병 진단·검진, 혈청검사, 농가교육 등) 기준 마련
- \* 기준(안) : 소(2만두당 2명), 돼지(10만두당 2명), 닭·오리(150만수당 2명)
- 시·군·구 가축방역부서 :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 및 조직 (축산계, 방역계) 보강

\* 기준(안) : 소·돼지·닭·오리·사슴 등 농장 300호당 2명(격일로 1농장 점검)

\*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축산차량 등록제 등 도입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

다. (기동방역기구) 시·군별로 관내 군인·경찰 책임자, 농축협, 방역본부 등으로 설치, 유사시 현장에 투입(2011. 7월부터)

• 구성(안) : 5개반 92명(중앙 초동대응팀 8 + 현장 기동조치팀 84)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1회 모의방역훈련(CPX) 실시

#### 4. 기타 제도개선 과제

가. 2012년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가축 전염병예방법 개정)

• (등록대상)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약 30만대)

- 2012년 :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업체·가축출하·수역사·인공수정사·방역사·컨설팅트 차량(13천대)부터 적용

\* 2011년 시범사업으로 차량(500대)에 GPS 장착, 사람(200명)에 스마트폰 배포

- 2013년 :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 (준수사항) 위치추적장치(GPS) 및 등록 차량스티커 부착,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농장출입 기록·신고
  - 정기적으로 차량 세척·소독 의무화
  - 관리기관이 축산농장 외 장소 출입내 용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익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나.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축산법 개정)

- (등록대상)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양도 하는 자

\* 가축거래상인 현황 : 소(970여명), 돼지(90), 닭(270), 오리(70)

- (등록요건) 방역요령, 동물복지 등 의무교육(16시간) 이수

\* 등록은 의무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준수사항) 가축운반시 등록차량 이용, 가축거래시 등록증 제시, 농장출입시 소독, 가축 거래내역 기록·관리

\* 미등록자의 가축거래 영업, 장부 기록의무 해태, 준수사항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칙 등 제재 조치 